

정 관

2014. 12. 8. 제정
2015. 7. 16. 개정
2016. 2. 22. 개정
2016. 8. 25.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7. 25. 개정
2019. 12. 3.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11. 26. 개정
2021. 12. 0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Electronics Recycling Cooperative”(약칭 “KERC”)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공제조합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제조합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그 이외의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 공제조합의 공고는 공제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문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5조(사업) 공제조합은 제2조 소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폐전기·폐전자제품(이하 “폐전자제품”이라 한다)의 친환경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제1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연구비 등 지원
3.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홍보 사업과 이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운영
4.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수집 및 통계작성
5. 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연구, 국내외 각종 정보수집 및 통계작성
6. 폐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외 재활용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7. 폐전자제품에 대한 국내외 회수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지원사업
8.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지원사업
9.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10. 자원순환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와 재활용의무의 공동이행과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11. 자원순환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의 대행과 이에 따른 분담금 징수
12. 폐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한 재활용 체계 구축·운영
13. 폐전자제품 회수의무 이행을 위한 회수 체계 구축·운영
14.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비용 지원
15. 폐전자제품 회수의무대행 및 재활용 의무대행 관련 실적 등에 관한 조사
16.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17. 폐전자제품 회수의무 및 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18.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연구 및 관련사업
19. 폐전자제품을 무상으로 방문수거하는 사업 및 대국민 홍보
20. 기타 공제조합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 ① 공제조합은 자원순환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의 회수·인계의무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 받아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는 재활용사업자와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폐전기·전자제품 유상거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공제사업에 대한 참여 및 분담금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한 참여 약정서를 제출 받아 회수 및 재활용 공제사업을 수행한다.

- 제7조(회수 및 재활용 관련 연구 및 연구비 지원사업)** ① 공제조합은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의 촉진 및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러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연구 및 기술개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 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 원

- 제8조(사원의 자격)** ① 공제조합의 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공제회원, 사업회원 및 일반회원 중 공제조합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공제조합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② 공제조합의 사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 ③ 사원총회는 제2항의 승인을 함에 있어 사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원은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사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사업회원인 사원의 수는 공제회원인 사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사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원 및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다.

- 제9조(사원의 권리)** ① 사원은 공제조합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공제조합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사원의 지위와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10조(사원의 의무)** ① 사원은 법령, 공제조합의 정관 기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원은 공제조합의 사업과 운영이 설립목적 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항상 노력해야 한다.
- ③ 사원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공제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 ④ 사원은 제14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발생 즉시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 제11조(자격상실)** 사원이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공제조합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제재)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해 사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본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공제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공제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및 사원총회 개최 전 해당 사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사원은 이사회 및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사원이 본 공제조합 사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원 및 회원 관리규정」에 따라 사원탈퇴서를 본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사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사원이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사원으로서의 본 공제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단,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사원이 아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한다.

제14조(신고)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공제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3. 사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본 공제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사원에게 있다.

제3장 회 원

제15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조합의 회원은 공제회원, 사업회원, 일반회원으로 한다.

② 공제회원은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전자제품 회수·인계 및 재활용 의무이행을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참여약정서를 제출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로 한다.

③ 사업회원은 제2항의 공제회원 외의 자로서 공제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사업자로 한다.

④ 일반회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회원 및 사업회원 외의 자로서 공제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재활용 제도 또는 관련 기술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원 및 회원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6조(가입) ①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폐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 의무 이행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제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 회원의 가입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원 및 회원 관리규정」에서 정한다.

제1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공제조합의 운영 및 분담금 산정, 회수·인계 및 재활용의무 이행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법령 및 공제조합의 정관 기타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회의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원은 제7장에 따른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출고·수입실적서 등 분담금 산출에 필요한 서류를 자원순환법에서 정한 기관에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그와 동일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발생 즉시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 회원은 제6조의 제1항에 의거 회원간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폐전기·전자제품들의 유상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탈퇴 등) ① 회원이 본 공제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원 및 회원 관리규정」에 따라 탈퇴서를 본 공제조합에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을 때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폐업한 경우

제20조(제명)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회의결 및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당해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본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3. 본 공제조합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본 공제조합의 목적 또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제44조에 따른 분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5. 공제조합과의 연락두절 등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때
6. 제6조 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원간 회수·인계·재활용의무대상 폐전기·전자제품

들의 유상거래행위가 적발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및 사원총회 개최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회원은 이사회 및 사원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공제회원(분담금 납부기한 만료일 : 당해연도 12월 30일)은 이사장 전결로 공제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 및 사원총회 시 별도 보고한다.

제21조(회원자격 상실에 따른 권리 및 의무) 회원이 제19조,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본 공제조합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고,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면한다. 단, 분담금미납 등의 미이행 의무는 면할 수 없다.

제22조(신고)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본 공제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경우
 -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업하였을 경우
 - 3.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4. 기타 본 공제조합이 필요하여 규정 및 총회 의결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당해 회원에게 있다.

제4장 임 원

제2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단,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 2. 감사: 2인
- ② 공제조합의 임원 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③ 공제조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 중 3명 이내의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상근임원으로 한다.
- ④ 임원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임기는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 및 상근임원은 1회, 감사는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이사장 및 상근임원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5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이사회에 추천에 의해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상근임원(연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서 추천하되, 사원총회의 승인에 의해 선임한다. 단, 신임 상근임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공개채용 절차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그 취임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조합을 대표하고 공제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제조합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공제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회계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결과를 확인하는 일

제27조의 2(임원의 겸직제한) 공제조합의 상근임원은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도 겸할 수 없다. 단, 이사장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공제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공제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공제조합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자원순환법, 민법, 공익법인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때
7. 환경부장관의 자원순환법에 따른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재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의결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개최 전 해당 임원에게 서면 등으로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다시 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제29조(상근임원의 직무대행) ① 상근임원이 유고시, 임기만료, 사임 또는 해임 등 궐위시 상근이사 중에서 선임자순으로,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 비상근이사 중에서 선임자 순(선임자 없을 경우 연장자 순)으로 상근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① 공제조합의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상근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보수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장 사원총회

제31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이 있을 때

3. 본 공제조합 사원의 3분의 1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할 때

4.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총회 소집절차) 이사장은 총회의 소집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사업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 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로써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총회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한다.

1. 공제조합의 해산결의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제조합의 정관변경은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사원이 행사한다. 다만,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 참여제한) ① 의장 또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재산 및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사원과 공제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총회가 임시의장을 지정한다.

제36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 보존한다.

1. 개최일자 및 장소
2. 출석자 수
3. 의사경과와 결과

제6장 이사회

제37조(이사회 구성) ① 공제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이사회 구성 시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자의 수를 이사 정원의 5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3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이사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6. 공제조합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8. 경비·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대여 및 차입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공제조합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2. 사원의 승인, 권리 정지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14. 예산의 전용승인에 관한 사항(단, 회원사의 의무량 변동에 따른 분담금, 회수·재활용 지원금, 법인세 및 예비비는 이사장에게 위임하고, 이사장이 전결한 전용 결과는 차기 이사회 시 별도 보고한다.)
15. 그 밖의 법령이나 공제조합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9조(이사회 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써 회의의 목적과 소집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한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②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공제조합과 이사 자신 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공제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

제41조(이사회 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42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의사록을 공제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위원회 등의 설치) ① 공제조합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분담금

제44조(분담금) ①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의 회수·인계의무 및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제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분담금은 매년 2월말 까지 고지한다. 단, 해당년도 실적이 확정된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스스로 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회원에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
2. 공제조합이 회수·인계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정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하는 사업 등 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 등 사업 운영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3. 회수체계가 미흡한 전기·전자제품군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④ 공제조합의 당해 년도 회수 및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과금은 부과금이 발생하는 차년도에 공제회원사로부터 별도 청구한다. 단, 당해 년도에 부과금 감경 등의 사유로 미사용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부과금으로 우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은 공제회원이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 분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비용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제회원, 사업회원, 외부 전문가(일반회원을 포함),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세부 구성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⑦ 기타 분담금의 세부항목, 공제회원별 분담금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가산금 징수, 회계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분담금의 처분제한 등) 분담금은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6조(회수·재활용부과금의 승계) ① 공제조합이 해산 또는 파산하여 공제회원의 회수·인계 및 재활용의무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때에는 각 공제회원이 회수부과금 또는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회수부과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은 각 공제회원의 회수의무량 또는 재활용의무량 중 각 공제회원이 스스로 회수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조에 따른 회수부과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제사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47조(수익사업) ① 공제조합은 제2조의 목적과 제5조의 사업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익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8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공제조합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49조(재활용시설 운영 등) ① 공제조합의 재활용시설 운영은 경영효율의 극대화 등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경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리사이클링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재산의 구분) ① 공제조합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공제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첨1 “재산목록”과 같다.

제51조(재산의 관리) ① 공제조합이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1.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

2. 기본재산의 담보

3.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첨1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2조(재원) 공제조합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53조(회계의 구분) ① 공제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운용한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 회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54조(회계원칙) ① 공제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회계연도) 공제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6조(업무보고) ① 공제조합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보고를 거쳐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공제조합은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 제출하고,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7조(세계잉여금) 공제조합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제조합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0장 보 칙

제58조(정관의 변경) 공제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해산)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해산 결의
2. 공제조합의 파산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0조(잔여재산의 처리) 공제조합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한다.

제6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공제조합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환경부 장관에 제출한다.

제62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3조(경미한 변경)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 개정 등 상위 규정 개정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2. 각종 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양식의 제·개정
3. 각종 규정 중 내용의 변경이 없는 문구의 수정
4. 각종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4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익법인법, 자원순환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공제조합의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명단은 별첨2 “임원”과 같다.

제3조(설립당시의 사무소의 주소지) 공제조합의 설립 당시 사무소의 주소지는 별첨3 “사무소 주소”와 같다.

부 칙 (2017. 0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경과 규정) ① 개정 정관 제3조는 201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임원의 임기와 선임에 관한 개정 정관은 효력 발생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07.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19. 12. 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0조 개정 정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2.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은 이 정관 시행 당시의 임원들에게도 적용한다. 이때 임원의 임기는 각 선출된 때로부터 산정된다.

부 칙 (2020. 11.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2021. 12. 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별첨1]

< 기본재산목록 및 평가액 >

1	사무실임대보증금 (채권) 300,000,000원
2	토지 (부동산) 8,022,358,000원
3	건물 (부동산) 2,780,160,220원

[별첨2]

임원

순번	임원의 구분	성명	생년월일
1.	이사(이사장)	장용철	1966.7.3.
1.	이사	황종수	1960.8.28.
2.	이사	류성남	1968.5.3.
3.	이사	김종찬	1958.12.2.
4.	이사	김태엽	1973.12.2.
5.	이사	허성필	1963.5.15.
6.	이사	송효택	1968.12.28.
7.	감사	정승오	1981.11.24.
8.	감사	구태균	1971.4.20.

[별첨3]

사무소 주소

주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제801호, 제802호, 제803호, 제804호,
제806호(이의동, 에이스광고타워1)